포항시 공고 제2015-138호

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. 11. 06.

포 항 시 장

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변경하고,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포항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(안 제3조)

나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자구수정

3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재정법」

4. 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 기간 : 2015. 11. 6. ~ 2015. 11. 27 (21일간)

6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5. 11. 27.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 : 예산법무과장, 주소 : 포항시 남구 시청로 1, 전화 270-2165, FAX 270-2049, E-mail : kji012@korea.kr)에게 서면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필요한 사항 등

7. 기 타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www.ipohang.org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**조례명 :**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″위원회″라 한다)의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에 따른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위원회 운영)”을 “(위원회 구성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″법″이라 한다) 제60조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″위원회″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3조제3항(종전의 제2항)제1호 중 “및 동법 시행령 제68조”를 “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(이하 ″영″이라 한다) 제68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”를 “영 제68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정기회의 및 임시회의”를 “정기회 및 임시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, 임시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, “수당”을 “수당과 여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에 따른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---------- ----------.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위원은 시의회의원,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관계 민간전문가,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, 시장이 위촉한다.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	<삭 제>
제3조(위원회 운영) ① <신 설>	제3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0조에 따른 공시 내용의

	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
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③ ----------.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	1. ----------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8조----------
2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	2. 영 제68조----------
③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	④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제4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.	제4조(회의) ①---------- 정기회 및 임시회----------.
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	②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, 임시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	<삭 제>

②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.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	
제7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	제7조(수당 등) ---------- 범위에서 ---------- 수당과 여비 ----------.